

<p>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p>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서의 진취적 기상을 기르며, 국가와 민족이 바라는 자질과 품성을 지닌 미래지향의 청소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하에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위치) 학생교육원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산 106번지에 둔다.</p> <p>제 3 조(원장) ①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원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 4 조(야외교육장) ①학생교육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교육원에 야외교육장을 둔다. ②야외교육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명 칭</th> <th>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대성의 집</td> <td>경기도 가평군 의서면 대성리 548번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256번지의 6호</td> </tr> <tr> <td>천마의 집</td> <td>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1번지의 1호</td> </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대성의 집	경기도 가평군 의서면 대성리 548번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256번지의 6호	천마의 집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1번지의 1호	
명 칭	위 치						
대성의 집	경기도 가평군 의서면 대성리 548번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256번지의 6호						
천마의 집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1번지의 1호						
<p>제 5 조(경비부담)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관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 6 조(시행규칙) 학생교육원의 직제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일에 서울학생교육원장은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기타의 서울학생교육원 소속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2.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서울학생교육원에서 실시된 연수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본다.</p>	<p>감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여학생생활교육원(이하 “여학생생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위치) 여학생생활교육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45번지에 둔다.</p> <p>제 3 조(원장) ①여학생생활교육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원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 4 조(경비부담) 여학생생활교육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비, 교재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 5 조(시행규칙) 여학생생활교육원의 직제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일에 서울여학생생활교육원장은 서울특별시여학생생활교육원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기타의 서울여학생생활교육원 소속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여학생생활교육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p>						
<p>서울특별시여학생생활교육원설치조례안</p>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여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심신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과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미래지향의 지혜로운 여성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p>							

2.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서울여학생생활교육원에서 실시된 연수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과학교육원설치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정보시대를 이끌어 갈 능력 있는 사람을 기르고자 서울특별시 관내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과학·기술교육에 대한 연구, 정보·자료의 개발·보급, 학생과 교원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치) 과학교육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00번지의 177호에 둔다.

제 3 조(원장) ①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원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4 조(경비부담) 과학교육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재비, 식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5 조(시행규칙) 과학교육원의 직제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일에 서울과학교육원장은 서울특별시과학교육원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기타의 서울과학교육원 소속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과학교육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2.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서울과학교육원에서 실시된 연수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이 조례는" 다음에 "서울특별시 관내의 공·사립의 고등학교이하"를 삽입한다.

제3조제1항중 "지방기계기좌로"를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으로"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과 본문중 "운영예산"을 "비용 부담"으로, "수리정비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을 "수리정비소의 기자재 수리·교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으로 한다.

제6조중 "공무원의 정원 및"을 "수리정비소의 직제와"로, "시행에"를 "시행에 관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8. 맑은물供給에關한建議案(水資源管理委員會委員長 提案)

(15時 45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18項 맑은물供給에關한建議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水資源管理委員會 黃好淳議員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好淳議員 尊敬하는 文一權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저는 衿川區 第2 選舉區 出身 水資源管理委員會 所屬 黃好淳議員입니다.

지난 7月 12日 第4代 서울特別市議會를 開院한 후 우리 水資源管理委員會는 두 차례의 懇談會와 現場視察, 그리고 3次 水資源管理委員會 常任委員會를 열어 所管業務를 把握하면서 맑은물 供給에 關한 對政府 建議案을 本議員이 提案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主文을 말씀드리면, 서울特別市議會는 千百萬 서울特別市民과 그리고 923萬 首都圈 國民에게 漢江水質 汚染防止와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原水를 供給하기 위하여 八堂湖 上水源特別對策地域 擴大指定과 環境汚染의 監視徹底, 그리고 基礎環境施設 增設과 正常運營을 期待하면서, 八堂湖 下流에서부터 서울特別市 市界區間의 上水源保護區域 指定公布 實施와 물 行정에 關한 主要改善方案을